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 1052호****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 공고**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제1호 및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5.1.31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2014.09.16. 실태조사 완료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에 따라 주민의견 추가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303명 중에서 사업추진 54명(17.82%), 해제 92명(30.36%)으로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 조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02-2148-2613~4)
3. 공람내용 :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 공고
4. 정비예정구역 현황
 - 1) 사업명칭 :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3) 면 적 : 4.9ha
 - 4)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10.10.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제)

구분	구명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종로구	1	신영동	214 번지 일대	4.9	170%	60%	3	2	단독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제1호 및 제4조의3제2항,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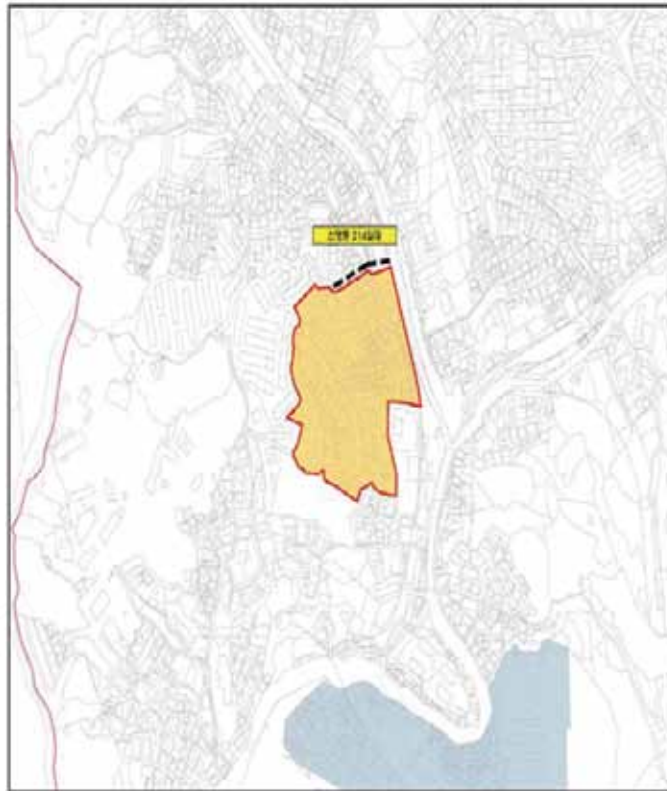
7.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종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비예정구역(해제)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붙임 1]

□ 정비예정구역(해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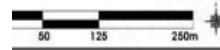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예정구역
(해제)

■ 종로구



■ 범례

- 정비예정구역(해제)
- 8m 도로
- 10m 도로
- 12m 도로
- 15m 도로
- 20m 도로
- 25m 도로



서울특별시

[붙임 2]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람기간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대 상 물 건 지	건 물			
	토 지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내 용				